

신청기관 : 방위사업청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도 - 독일의 관련 제도 소개 -

박성은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법학박사

I 들어가며

공무원은 일상적인 대민지원업무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큰 업무들도 수행한다. 이런 업무들은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아 문제가 되거나 이미 진행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정치적 비판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안타까운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고, 이와 무관하게 종종 정략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당해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수행한 경우에도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사법부에 묻게 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고 과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법적 분쟁의 부담을 진다면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고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므로 공무원에 대한 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업무수행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구조가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가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공무원에 대한 법률구조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공무원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관련 법제를 소개하여 비교의 대상으로 삼겠다. 법률구조의 범위와 내용은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야 하겠지만, 이런 법비교를 통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와 공무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

변호사단체나 사회단체에 의한 사적 영역의 법률구조를 제외하면,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형사국선변호제도, 법률구조법에 근거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실시하는 법률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을 법률구조의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별도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제도이고, 이 제도에 의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공무원이 자금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를 받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게다가 소송구조는 단순히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유예하는 데에 불과하고 현재의 판례는 변호사보수의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산정하여 패소자에게 상환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소송구조를 받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비용의 일부는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형사국선변호제도

형사국선변호제도는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이 없는 형사소송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이다.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외에 만약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¹⁾

1 형사국선변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들: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농아자(聾者)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2.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형사국선변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 절차에 회부된 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정도가 될 것이다. 체포 및 구속절차를 지나 공판절차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이처럼 매우 중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된 경우이어야 하므로 그보다 경미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²⁾ 법률구조법 제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구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구조법 자체에는 법률구조의 요건과 내용 및 그 대상자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3조, 제16조, 제43조에 따르면 이 법률에 의한 법률구조는 민사나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절차 등 거의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해 이루어진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구조를 받은 의뢰인에게는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나 금품을 청구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동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런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다.³⁾

공무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를 받을 가능성은 위의 두 제도보다 더 커 보인다. 법률구조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6급 또는 6급상당이하의 공무원(동조 제3호)과 위관급 장교이하의 군인(동조 제4호)의 경우에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는 그를 대리하여 법률구조를 위한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

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4.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5.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6.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제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조대상자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열하고 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를 구체화하면서 다시 제6호에서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를 규정하여 구조대상자를 확장할 여지를 두고 있다.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본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유료법률구조 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고, 이 중에서 다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및 제62조,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4조에 나열된 사항에 속하는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생명·신체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국가유공자, 보호대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등을 비롯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 복귀 제대군인 등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요건 예외 대상자에는 농업인, 어업인(중위소득 150% 이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선원피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이 포함된다.

여는 법률구조를 위하여 그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⁴⁾ 여기에는 소득 등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2018년 9월 1일부터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용된 경찰공무원(해양경찰을 포함한다) 및 「소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⁵⁾

이에 따르면 하급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민·형사상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법적 분쟁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그러나 업무수행으로 법률분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히려 상급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라고 예상된다. 물론 이들은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법률구조의 취지가 단순히 공무원의 자금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데에도 있으므로, 상급 공무원과 군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것은 제도상 부족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직무수행상 분쟁의 소지가 많은 하급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⁶⁾

III 독일의 공무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개관

독일에 관해서는 법률구조 전반이 아니라 직무상 행위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상 소제기의 상대방이 된 공무원에 대해 그의 고용주인 정부 또는 관청이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특히 해당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상 근거에 의해 지원의 요건과 범위가 정해지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독일에서 연방정부나 연방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급 공무원들의 고용주로서 일반적인 보호의무(Fürsorgepflicht)를 지고, 이 보호의무로부터 직무상 행위로 인해 소송을 겪는 공무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도출된다. 연방정부나 연방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고용주(이하에서는 “고용주”라고만 표기)의 공무원에 대한 보호의무는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제33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방공무원법(BBG = Bundesbeamtengesetz) 제78조 제2항에서, 연방주 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BeamStG = Beamtenstatusgesetz) 제45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두 규정은 동일한 문구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공무원의 직무활동과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이 포괄적인 일반조문은 연방주의 법률과 행정규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들의 보호에 관해 더 상세하게 구체화된다. 법적 보호의 보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 연방주들에서 연방주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4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seobu.scourt.go.kr/jjubmgr/klac/Klac.work>)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s://cyberbureau.police.go.kr/mobile/sub/sub_08_b.jsp)의 설명도 이와 같다.

5 2018년 9월 7일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102&vc=1159270>).

6 2018년 9월 7일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수가 연평균 700명에 이르고, 119구급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의 법적 보호 보장을 위한 요건들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정들(Verwaltungsvorschriften)이 제정되었다. 연방공무원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연방내무부의 2005년 12월 2일자 회람문서 GMBI 2006 제38면(Rund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en vom 02.12.2005 (GMBI 2006 S. 38))에서 연방주들의 행정규정들과 유사한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청에 기해 권리방어(Rechtsverteidigung)⁷⁾의 필수적 비용을 위한 가불(Vorschuss)이나 이자 없는 대출(zinsloses Darlehen)이 제공될 수 있다. 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나거나 승소한 경우에 공무원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반대로 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거나 패소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할부로) 상환해야 한다. 행정규정들에는 공무원이 형사절차에 들어간 상황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소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이유로 한 민법(BGB) 제839조 및 기본법(GG) 제34조⁸⁾에 따른 국가책임의 소(Staatshaftungsklage)는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연방주 또는 연방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공무원에 대한 보호의무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의 보장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예를 들어 진실되지 않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외부에 대한 반박보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도 질 수 있다.

IV 독일의 공무원에 대한 법률구조의 법적 근거들

1. 헌법상 근거

고용주에 의한 공무원의 포괄적 지원은 우선 기본법 제33조에 헌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위 보호의무(Fürsorgepflicht)에서 도출된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계속적 과제로서, 통상 공법상 고용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된다.

제5항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적 원칙들을 고려하여 공무원법을 규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법적 지위, 즉 고용주에 대한 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공무원관계는 공법상 고용 및 충성관계(Dienst- und Treueverhältnis)에 해당한다.⁹⁾ 이러한 공무원의 고용 및 충성관계는

7 “법적 방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주로 소송에서 피고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변론, 증거제출 등의 조치들을 가리킨다.

8 독일 기본법 제34조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공무의 수행 중에 있는 자가 제3자에 대한 직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그 소속 단체가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9 Maunz/Dürig-Badura, GG-Kommentar, 73. Ergänzungslieferung 2014, Art. 33 GG, Rn. 58.

그 내용상 핵심이 공무원과 그의 고용주 사이의 상호적인 기본의무들로 구성된다. 공무원의 충성 및 복종의무(Treue - und Gehorsampflicht)¹⁰⁾는 고용주인 국가의 보호 및 부조의무(Fürsorge- und Alimentationspflicht)와 상관관계에 있다.¹¹⁾

더 나아가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공법상 고용 및 충성관계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적 원칙들에 따라 규정된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은 헌법의 객관적 규정(objektives Verfassungsrecht)으로서 공무원제도의 구조원리들의 핵심요소를 보장하는 동시에¹²⁾ 개별 공무원들의 기본권과 유사한 개인권리(grundrechtsgleiches Individualrecht)에 관한 규정이기도 하다.¹³⁾ 여기서 구조원리들의 핵심요소(Kernbestand von Strukturprinzipien)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통이 형성되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적어도 바이마르 제국의 헌법 하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유지된 원칙들을 가리킨다.¹⁴⁾ 고용주의 공무원에 대한 보호의무라는 원칙은 바로 이런 직업 공무원제도의 전통적 원칙에 해당한다.¹⁵⁾

2. 연방주 공무원(Landesbeamte)에 대한 법적 근거

독일의 공무원 그룹들 중에서 연방주 공무원의 숫자가 가장 많다. 연방 전체를 통틀어 약 167만 명의 공무원과 법관 중에서 약 18만 1천 명만이 연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반면, 연방주 공무원은 127만명이고 지자체 공무원은 18만 7천 명이다.¹⁶⁾ 그러므로 연방주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다.

1)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BeamtStG)

독일연방의 입법자는 헌법상 보장된 보호의무의 내용형성 위임에 따르기 위해 연방주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45조 (보호)

고용주는 고용 및 충성관계에서, 공무원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무원들과 그들의 가족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활동과 지위를 보호한다.

10 공무원들의 고용 및 충성관계는 특히 그들의 파업금지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vgl. BeckOK-GG, Epping/Hillgruber-Hense, 40. Auflage, Art. 33, Rn. 29.

11 Maunz/Dürig-Badura, GG-Kommentar, 74. Ergänzungslieferung 2015, Art. 33 GG, Rn 60; BeckOK-GG, Epping/Hillgruber-Hense, 40. Auflage, Art. 33, Rn 45; BVerfGE 119, 247, 264.

12 BeckOK-GG, Epping/Hillgruber-Hense, 40. Auflage, Art. 33, Rn 34; BVerfGE 119, 247 (260).

13 BeckOK-GG, Epping/Hillgruber-Hense, 40. Auflage, Art. 33 GG, Rn 35; BVerfGE 8, 1 (12, 17).

14 Maunz/Dürig-Badura, GG-Kommentar, 73. Ergänzungslieferung 2014, Art. 33, R.n 65; BVerfGE 8, 332 (343).

15 BVerfGE 43, 154 (165); vgl. auch Reich, BeamStG, 3. Auflage, 2018, § 45 Rn 1.

16 Vgl. Bericht des Statistischen Bundesamts zum Personal des öffentlichen Dienstes von 2017, S. 25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FinanzenSteuern/OeffentlicherDienst/PersonaloeffentlicherDienst2140600177004.pdf?__blob=publicationFile).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이 조문은 일반조문(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문)으로서 작성되었다. 즉, 고용주의 개별적인 의무들과 그 범위는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완결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문화된 규정들과 실무에 의해 형성되는 사례들을 통해 전체 법질서를 고려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¹⁷⁾ 이에 상응하게 동조는 헌법상의 보호의무를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할 연방주들의 권한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¹⁸⁾ 그러므로 이 조문에 대해서는 각 연방주들의 공무원법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다.¹⁹⁾ 만약 고용주의 보호의무에 대해 이런 개별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일반조문이 적용된다.²⁰⁾

2) 행정규정들(Verwaltungsvorschriften)

대부분의 연방주들은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단지 연방주공무원법만을 제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주의 보호의무의 틀에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위 행정규정들을 만들었다.

보호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이런 행정규정들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은, 고용주(국가)는 법률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형성의 자유에 근거하여 행정규정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점들에 따라 일정한 사례 그룹들에 관해 보호의무의 행사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반복해서 판시해왔다. 보호의무의 통일적인 행사를 위한 그러한 종류의 행정규정들로 인해서, 고용주는 행정규정들에 언급된 모든 사례들을 이 규정들에 따라 취급해야 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경우에만 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²¹⁾

(1) 지원요건

연방주들의 개별 행정규정들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법적 보호의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들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²⁾

행정규정들이 가정하는 기본상황은 주로, 한 공무원에 대해 직무수행이나 직무상 활동과 관련이 있는 행위 때문에 검찰의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소(eine öffentliche Klage) 또는 사소(Privatklage)²³⁾가

17 BeckOK Beamtenrecht Brinktrine/Schollendorf-Badenhausen-Fähnle, 14. Ed. 2019, BeamtStG § 45 Rn. 1.

18 Reich, BeamtStG, 3. Auflage, 2018, § 45 Rn 1.

19 Vgl. die Aufzählung bei Reich, BeamtStG, 3. Auflage, 2018, § 45 Rn 1: §§ 78 ff. BwLBG, Art. 96 ff. BayBG, §§ 74 ff. BlnLBG, § 62 BbgLBG, §§ 80 ff. BremBG, §§ 80 ff. HmbBG, §§ 80 ff. HBG, §§ 80 ff. LBG M-V, §§ 80 ff. Nbg, §§ 75 ff. LBG NRW, §§ 66 ff. RPLBG, §§ 67 ff. SBG, §§ 80 ff. SächsBG, § 83 LBG LSA, §§ 80 ff. SH LBG und §§ 72 ff. ThürBG.

20 BeckOK Beamtenrecht Brinktrine/Schollendorf-Badenhausen-Fähnle, 14. Ed. 2019, BeamtStG § 45 Rn. 1.

21 Vgl. nur BVerwG Ur. v. 09.07.1984, Az.: BVerwG 2 B 45/84.

22 이 설명은 인구수가 가장 많은 다섯개의 연방주들에 국한된다. 해당 연방주들의 관련 행정규정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Nordrhein-Westfalen: „Gemeinsamer Runderlass des Innenministeriums und des Finanzministeriums – Rechtsschutz für Landesbeschäftigte“; Baden-Württemberg: „Verwaltungsvorschrift des Innenministeriums zur Durchführung beamtenrechtlicher Vorschriften“; Bayern: „Verwaltungsvorschriften zum Beamtenrecht“; Niedersachsen: „Verwaltungsvorschriften zum Niedersächsischen Beamtenengesetz“; Hessen: „Verwaltungsvorschriften über die Gewährung von Rechtsschutz für Landesbedienstete; Gemeinsamer Runderlass des Ministeriums des Innern und für Sport, zugleich im Namen der Staatskanzlei und der Ministerien“.

23 독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등이 스스로 사소(Privatklage)를 제기할 수 있다.

제기되거나, 약식명령(Strafbefehl)의 신청 또는 벌금고지서 발부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권리방어를 위한 필수적 비용의 지급 신청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불(Vorschuss)이 제공되거나,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대출(zinsloses Darlehen)이 제공될 수 있다.²⁴⁾

다음의 요건들이 가불 또는 대출의 제공을 위해 충족되어야 한다:²⁵⁾

1. 당해 권리방어에 직무상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이익은 예를 들어 당해 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관련 연방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²⁶⁾
2. 변호인의 임명 또는 감정서 신청 등과 같은 방어조치²⁷⁾가 사실관계 또는 법적 상황의 특징에 비추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3. 비용을 마련하는 것²⁸⁾이 당해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다른 곳(노동조합 또는 직역단체 제외)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법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5. 일부 연방주에서는 상황에 따라 당해 공무원수행자(Bedienstete)에게 과책이 없거나 경미한 과책(kein oder nur ein geringes Verschulden)만 있을 것이 요구된다.²⁹⁾

(2) 지원범위

가불 및 대출의 액수는 권리방어의 필수적 비용에 따라 정해진다. 이 필수적 비용은 그 총액에 있어 민사소송법(ZPO) 제91조, 형사소송법 제464a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대리를 위한 권리방어 또는 소추의 법률상 비용에 국한된다.³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변호사보수를 넘어서는 보수의 지급을 합의하는 경우이다. 이런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변호사업무의 범위와 난이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필수적 비용으로 인정된다.³¹⁾

해당 공무원이 이후에 제공받은 가불 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공무원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상환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초의 지원신청과 다른 또 한번의) 신청에 기해 가불은 종국적으로 연방주가 예산지출로서 부담하고 대출은 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즉, 연방주는 해당 공무원에 의한 가불 또는 대출금의 상환을 포기한다.³²⁾

24 42.1 S.1 VV BaWü; 2.1.1 S. 1 VV Bay; zu § 87 1.1 S. 1 VV Nd; II. 1. VV NRW; 2.1. S. 2 VV Hessen. Vgl. auch BeckOK Beamtenrecht Brinktrine/Schollendorf-Badenhausen-Fähnle, 14. Ed. 2019, BeamStG § 45 Rn. 13.1.

25 42.3 VV BaWü; 2.1.2 VV Bay; § 87 1.1 S. 2 VV Nd; II. 2. VV NRW; 2.2 VV Hessen.

26 2.1.2.1 VV Bay 또는 § 87 1.1. S. 2 a) VV Nd.에 규정된 예시.

27 42.3 Spiegelstrich 2 VV BaWü 또는 § 87 1.1. S. 2 b) VV Nd.에 규정된 예시.

28 이 규정에 근거한 지원 이외의 자금마련 방법을 의미한다.

29 2.1.2.3 VV Bay; II. 2.c) VV NRW.

30 42.1 S.1 VV BaWü; 2.1.3 S. 1 VV Bay; § 87 1.2 S. 1 VV Nd; VI. 1. VV NRW; 8. S. 1 VV Hessen.

31 42.1 S. 2 VV BaWü; 2.1.3 S. 2 ff VV Bay; § 87 1.2 S. 2 ff VV Nd; VI. 2. VV NRW; 8 S. 2 ff VV Hessen.

32 42.6 S. 1 VV BaWü; 2.1.4 VV Bay; § 87 1.4 S. 1 VV Nd; II. 3. VV NRW; 2.3.1 S. 1, 2 VV Hessen.

반대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고 기불 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³³⁾ 이 때에 상환은 (적절한 기간의) 할부라도 이행될 수 있다.³⁴⁾ 그러나 개별사안에서 - 특히 공무원의 과책이 경미한 경우에는 - 고용주가 적절한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예외적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³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주들의 행정규정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과 세밀함에 있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연방주들에서는 “권리방어의 직무상 이익(dienstlichen Interesses an der Rechtsverteidigung)”이라는 요건이 (경찰)집행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그가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원칙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³⁶⁾ “비용을 마련하는 것의 기대가능성((Un-)Zumutbarkeit der Verauslagung der Kosten)”을 심사할 때에 당해 공무원의 수입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헤센주에서는 명시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봉급을 산정기초로 고려한다.³⁷⁾ 바이에른주에서는 심지어 명시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봉급에 비례하여 권리방어의 비용에 대한 적절한 자기부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

위에서 살펴본 형사절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민사상 분쟁에 대해서도 연방주들은 고용주에 의한 법적 보호 제공에 관한 행정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직무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을 겪는 공무원은 권리소추 및 방어의 필수적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불 또는 이자 없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절차에 대한 경우와 약간의 차이만 있는 요건들이 요구된다.³⁹⁾

여기서 대부분의 행정규정들은, 공무원이 민사소송의 피고인 경우(Passivprozess: 수동적 소송)와 스스로 원고로서 제3자에게 소를 제기한 경우(Aktivprozess: 능동적 소송)를 구별하는데 그 구별이 매우 까다롭다.⁴⁰⁾ 그러나 수동적 민사소송은 이제까지 실무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⁴¹⁾ 왜냐하면 민법 제839조 및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소위 국가책임청구권(Staatshaftungsansprüche)은 국가 또는 연방주를 상대방으로 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공무원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제83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자기책임(Eigenhaftung)은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면책효에 의해 국가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국가가 당해 공무원 대신에 책임을 진다.⁴²⁾

33 42.7 S. 1 VV BaWü; 2.1.7 S. 1 VV Bay; § 87 1.5 S. 1 VV Nd; II.3. S. 3 VV NRW; 2.3.2 S. 1 VV Hessen.

34 2.1.7 S. 2 VV Bay („Soll-Vorschrift“); § 87 1.5 S. 1 VV Nd („Ist-Vorschrift“); II.3. S. 3 VV NRW („Ist-Vorschrift“); 2.3.2 S. 1 VV Hessen („Ist-Vorschrift“).

35 42.7 S. 2, 3 VV BaWü; 2.1.5 S. 2 VV Bay; § 87 1.5 S. 2 VV Nd; II.4 S. 2 VV NRW; 2.3.2 S. 2 VV Hessen.

36 42.10 S. 2 VV BaWü; 2.2.1 S. 1 VV Bay (weitere Regelungen für (Polizei)Vollzugsbeamte bei Zivilverfahren in 2.4); II.2.a) S.2 VV NRW.

37 2.2. S. 4 ff VV Hessen.

38 2.5.3 ff VV Bayern.

39 42.2. VV BaWü; 2.3 VV Bay; § 87 1.11 VV Nd; III 1 VV NRW; 4. VV Hessen.

40 So etwa 2.3.1, 2.3.2 VV Bay; III 1. S. 1, 2 VV NRW; 4.1.1., 4.1.2. VV Hessen.

41 Vgl. Gutachten der Wissenschaftlichen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s – Übernahme von Anwaltskosten eines Bundespräsidenten durch den Bund, WD 3- 3000 – 055/12, S. 5, ohne Erklärung.

42 OLG Frankfurt a.M., Beschluss vom 15.05.2006, 1 U 203/05; Palandt-Sprau, 77. Auflage 2017, § 839, Rn 12;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age 2011, § 26 Rn. 7.

공무원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상환되지 않은 권리소추 및 방어의 필수적 비용을 연방주가 부담한다.⁴³⁾ 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권리소추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 때에도 특별히 가혹한 경우 등에는 다시 예외를 둘 수 있다.⁴⁴⁾

3. 연방공무원(Bundesbeamte)에 대한 법적 근거

1)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

연방주 공무원에 대해서 매우 작은 수의 연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호의무가 소위 연방공무원법에서 법률상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동법 제1조에 따르면 연방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고용주의 보호의무에 관한 연방공무원법 제7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공무원법 제78조 (고용주의 보호의무)

고용주는 고용 및 충성관계에서, 공무원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무원들과 그들의 가족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활동과 지위를 보호한다.

이 일반조문은 위에서 소개한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설명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연방내무부의 지침(회람문서)

연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보호의무는 “연방내무부의 2005년 12월 2일자 회람문서 GMBI 2006 제38면 (Rund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en vom 02.12.2005 (GMBI 2006 S. 38))”에서 법적 보호의 제공에 관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다. 그 내용은 위에서 소개한 연방주들의 행정규정들과 대체로 동일하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수행자(Bedienstete)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직무상 활동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검찰의 수사 절차가 개시되거나, 형사절차에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권리방어의 필수적 비용을 위한 이자 없는 대출이 신청에 기해 제공될 수 있다.⁴⁵⁾ 여기서 공무원수행자(Bedienstete)에는 공무원과 법관 등만 아니라 연방의 통상의 피고용인들(normale Arbeitnehmer)도 포함된다.⁴⁶⁾

43 42.6. S. 4 VV BaWü; 2.3.2.3 VV Bay; III 4 VV NRW; 4.3 S. 1 VV Hessen.

44 42.7. VV BaWü; 2.3.2.4 VV Bay; III. 5. VV NRW; 4.1, 4.3 S. 1 VV Hessen.

45 I. S. 1 Rundschreiben des BMI.

46 I. S. 7 Rundschreiben des BMI.

(1) 지원요건

위 회람문서의 제4면에 따르면 대출 제공을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a) 목적에 부합하는 권리방어에 직무상 이익이 존재하고 ((경찰)집행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
- b) 해당 관청에 법적 보호의 제공이 기대가능해야 하고 (특히 고용주가 스스로 소송을 건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c) 공무수행자에 의해 수행된 조치들의 범위가 사실관계 또는 법적 상황의 특징에 비추어 적정한(geboten) 것으로 보여야 하고,
- d) 그 사안의 상황에 따라 공무수행자에게 과책이 없거나 중대한 과책이 없어야 하고,
- e) 다른 방법으로는 주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 f) 당해 공무수행자가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런 기대가능성에 관해서는 봉급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면 대출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⁴⁷⁾

(2) 지원범위

대출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관청이 의무에 부합하는 재량에 따라(nach pflichtgemäßem Ermessen) 결정한다.⁴⁸⁾ 회람문서의 I. 1.에서 의미하는 권리방어의 필수적 비용(notwendige Kosten der Rechtsverteidigung)이란 민사소송법 제91조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464a조 제2항에 따른 변호사대리를 위한 보수 및 경비를 가리킨다.⁴⁹⁾ 법률에 규정된 보수의 범위를 넘는 것은 예를 들어 사안의 중요성 및 변호사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한 일정한 요건들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⁵⁰⁾ 원칙적으로 공무수행자는 소송비용에서 적절한 자기 부담분을 부담해야 하지만,⁵¹⁾ 예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및 원칙적으로 (경찰)집행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⁵²⁾

무죄판결, 본안절차 개시의 거부 또는 절차중지(형사소송법 제467조)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⁵³⁾ 예를 들어 중대한 과책이 없거나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상환이 배제될 수 있다.⁵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도 공무수행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상환이 배제될 수 있다.⁵⁵⁾ 이외의 경우에는 대출금은 적절한 기간의 할부로 상

47 I. S. 2 Rundschreiben des BMI.

48 I. S. 5 Rundschreiben des BMI.

49 II. 1. a) Rundschreiben des BMI.

50 II. 1. d) Spiegelstrich 2 Rundschreiben des BMI.

51 II. 2. S. 1 Rundschreiben des BMI.

52 II. 2. S. 2, S. 3 Rundschreiben des BMI.

53 (ohne Ermessen), III. S. 3 Rundschreiben des BMI.

54 III. S. 4 Rundschreiben des BMI.

55 III. S. 4 Rundschreiben des BMI.

환되어야 한다.⁵⁶⁾

4. 기타의 보호의무들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연방공무원법 제78조로부터, 고용주가 공무원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기타의 보호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 고용주는 공무원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해 진실되지 않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고용주가 상황에 따라 반박보도를 통해서 이에 대처할 것이 요청된다.⁵⁷⁾ 만약 공무원이 부당한 방식으로 그의 고용주로부터 비리를 저질렀다고 추궁을 당하면, 고용주는 그에게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하고, 이것은 그 고발자에게 비밀로 할 것을 약속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⁵⁸⁾ 공무원에 대한 이런 특별한 보호는, 그에게 “대중으로의 도피(Flucht in die Öffentlichkeit)”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도 필요하다.⁵⁹⁾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주의의무(Sorgfaltspflicht)를 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해 정당한 실질적 이유 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리한 사실주장과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모두에 적용된다.⁶⁰⁾

V 마치며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에는 직무상 행위로 인한 법률분쟁에 빠진 공무원을 지원하는 특별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구조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나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법률구조제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인다. 한국의 법률구조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확실적인 기준을 두고 주로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데에 비해서, 독일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자금능력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열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원대상에 있어 상급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을 구별하지 않는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독일의 방식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 공무원은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의 지원과 소득이 낮은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56 III. S. 1 Rundschreiben des BMI.

57 Battis-Grigoleit, BBG, 5. Auflage 2017, § 78, Rn. 14; BVerwGE 99, 56; BeckOK Beamtenrecht Brinktrine/Schollendorf-Badenhausen-Fähle, 14. Ed. 2019, BBG § 78 Rn. 29.

58 Battis-Grigoleit, BBG, 5. Auflage 2017, § 78, Rn. 14; BVerwG NJW 2003, 3217.

59 Battis-Grigoleit, BBG, 5. Auflage 2017, § 78, Rn. 14; BVerwG, 29.06.1995, Az.: BVerwG 2 C 10/93.

60 BVerwG, Urt. v. 29.06.1995, Az.: BVerwG 2 C 10/93; BeckOK Beamtenrecht Brinktrine/Schollendorf-Badenhausen-Fähle, 14. Ed. 2019, BBG § 78 Rn. 33.

하고 그 비용총당에 있어 봉급의 가불이나 무이자대출 등의 지원을 한다.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열성적인 공익법무관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더 전문적이고 자신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를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게다가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승소하면 가불과 무이자대출이 지원금으로 전환되고 패소하면 상환하도록 차별적으로 규정한 것과 일부 연방주들이 중과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도 합리적이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국가가 공무원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인식을 피하고 법률구조를 위한 자원이 헛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수한 법률구조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이 법률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Battis, Ulrich, Bundesbeamtengesetz: BBG Kommentar, 5. Auflage, 2017.

Epping, Volker/Hillgruber, Christian, Beck'scher Online-Kommentar Grundgesetz, 40. Edition 2019.

Brinktrine, Ralf/Schollendorf, Kai, Beck'scher Online-Kommentar Beamtenrecht Bund, 14. Edition 2019.

Bericht des Statistischen Bundesamts zum Personal des öffentlichen Dienstes von 2017.

Maunz, Theodor/Dürig, Günter, Grundgesetz-Kommentar, 73. Ergänzungslieferung 2014.

Maunz, Theodor/Dürig, Günter, Grundgesetz-Kommentar, 74. Ergänzungslieferung 2015.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age, 2011.

Palandt, Otto, Bürgerliches Gesetzbuch - Kommentar zum BGB mit Nebengesetzen, 78. Auflage, 2019.

Reich, Andreas, Beamtenstatusgesetz: BeamtStG, Kommentar, 3. Auflage, 2018.

Rund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en vom 02.12.2005 (GMBI 2006).